

LNG및액화석유가스안전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안번호	19
의 결 년 월 일	95. 8. 12 (제40회)

제안년월일 : 1995. 8. 12

제 안 자 : 안창근의원외 19인

1. 주 문

도시의 급격한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공해가 없고 사용이 편리한 LNG 및 액화석유가스 사용가구가 급증하고 있어 가스안전사고를 사전에 막고 안전한 시민생활을 영위토록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2. 제안이유

최근 대형가스폭발사고 등으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시민생활이 크게 위협을 받고 있어 LNG안전실태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에 대한 설치기준 타당성 조사 및 안전관리이행 여부 등을 심도있게 확인하고 소비자에 대한 계도사항 등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시민생활의 안전을 기하고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3.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7조

4. 참고사항

- 구성인원 : 12명(재무경제위원회)
- 활동기간 : 세무계획 승인일로부터 1개월
- 특정사안 : 액화석유판매업자의 법규준수사항 이행여부조사 확인, 이용자에 대한 행정기관의 계도실태 및 기타 LNG가스안전실태